

제221회 정례회

2003. 12. 2(화)

검 토 보 고 서

청주교육대학교학생장학금지급에관한조례안

전문위원 임석규

검 토 보 고 서

☐ 전문위원 임석규입니다.

☐ 2003년 11월 10일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13일
우리위원회에 회부된

- **청주교육대학교 학생 장학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**에 대한
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.

☐ 먼저, 동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보고드리면

- 충청북도교육감이 청주교육대학교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여
졸업후 일정 기간동안 충청북도공립초등학교에 의무적으로 복무
하게 하여
- 초등교사의 수급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자 함에 있습니다.

☐ 주요골자로는

- 교육감은 청주교대총장과 장학금 지급에 관한 협약을 매년 체결하여
- 총장이 추천하는 장학생에게 입학금, 수업료, 기타 공납금에 상당
하는 금액을 지급하며
- 졸업후에는 초등교사 임용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
도내 공립초등학교에 3년간 의무적으로 복무하게 하는 내용 등
입니다.
-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☐ 다음은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.

- 금번 제출된 동 조례안은 충청북도 공립초등학교 교원수급의 안정적인 확보와 그 가시적 성과를 얻기를 위한 그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.
- 그러나 동 조례안의 내용을 면밀히 분석하여 볼 때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하여는 심도있는 심사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.
 - 첫 제, 초등교사의 안정적인 확보에만 치중하는 이유는 무엇인지
 - 둘 제, 청주교대 총장이 추천하는 장학생의 세부기준은
 - 셋 제, 청주교대에서 시행하고 있는 기존의 장학제도와 중복되어 예산의 낭비는 아닌지
 - 넷 제, 도내 타 대학에 재학중인 교육학 전공자와의 형평성과 특혜성 여부
 - 다섯째, 장학금이 입학금, 수업료, 기타 공납금으로 되어 있는데 그 금액의 적정성 여부
 - 여섯째, 장기요양의 경우 그 기간의 범위와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의 첨부
 - 일곱째, 3년 의무복무, 장학금 반납 등 의무 불이행시 재정보충 확보 및 강제징수 가능 여부
 - 여덟째, 의무 복무기간을 제한 할 수 있는 법령상의 근거와 그 위법성의 여부
 - 아홉째, 초등교사의 수급계획(시행 5년전 ~ 향후 10년간)
 - 열번째, 투자되는 소요재원 대비 동 조례의 목적 달성여부 등 그 실효성에 대하여는 상세한 설명이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.

☐ 이상으로 동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.

☐ 감사합니다.